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촌진흥청에 농림위성 활용 서비스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6급 1명), 농산물 안전분석 업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지도관 1명, 지도사 1명) 및 노사협력 업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에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8급 1명), 농산물 안전분석 업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며, 농업기반기술의 농업현장 실용화를 위하여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4·5급 1명)의 직급을 4급(1명)으로 조정하고, 부처간 협업성과 평가제를 적용하는 한시정원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외래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1명(농림축산식품부 5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 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농촌진흥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에 고온극복 혁신형 온실 실증연구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연구관 2명, 연구사 2명, 8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 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였던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인력 3명(연구관 3명)을 종전의 직급(연구사 3명)으로 각각 환원하며,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방호직렬 정원 1명(9급 1명)을 시설직렬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0.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기술지원팀”을 “기술지원과”로, “기술지원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을 “기술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지원팀장”을 “기술지원과장”으로 한다.

제3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외래 병해충 예찰(豫察)·방제 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1명(농업연구관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장(제41조)을 삭제한다.

별표 2 중 총계 “338”을 “344”로 하고, 일반직 계 “337”을 “343”으로 하며, 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72”를 “74”로 하고, 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식품위생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46 다음에 “행정주사·농업주사·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1”을 신설하며, 전산주사 “2”를

“3”으로 하고, 운전서기보 3 다음에 “농업연구관 1”을 신설하며, 농촌지도사 “23”을 “24”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341”을 “347”로 하고, 일반직 계 “340”을 “346”으로 하며, 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73”을 “75”로 하고, 행정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시설주사·방송통신주사·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1 다음에 “행정주사·농업주사·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1”을 신설하며, 전산주사 “2”를 “3”으로 하고, 운전서기보 3 다음에 “농업연구관 1”을 신설하며, 농촌지도사 “23”을 “24”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519”를 각각 “523”으로 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을 “2”로 하며,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을 삭제하고, 공업서기 11 다음에 “농업서기 1”을 신설하며, 공업서기보 2 다음에 “시설서기보 1”을 신설하고, “방호서기보 1”을 삭제하며, 농업연구관 “76”을 “77”로 하고, 농업연구사 “247”을 “249”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521”을 각각 “525”로 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을 “2”로 하며,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을 삭제하고, 공업서기 12 다음에 “농업서기 1”을 신설하며, 공업서기보 2 다음에 “시설서기보 1”을 신설하고, “방호서기보 1”을 삭제하며, 농업연구관 “80”을 “81”로 하고,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보건

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29”를 “27”로 하며, 농업연구사 “242”를 “246”으로 한다.

별표 7 중 농업연구관 “76”을 “75”로 하고, 농업연구사 “159”를 “160”으로 한다.

별표 8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330”을 각각 “335”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326”을 “331”로 한다.

별표 9의2 1)부터 3)까지를 각각 2)부터 4)까지로 하고, 같은 표에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과	-	2023년 9월 30일까지
------------------	---	----------------

별표 11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국립농업과학원) ① 국립 농업과학원에 기획조정과·운 영지원과· <u>기술지원팀</u> 및 환경 개선미생물연구단을 두되, 기획 조정과장 및 운영지원과장은 부 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u>기술지원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농업 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u> 으로, 환경개선미생물연구단장은 농 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 경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1조(국립농업과학원) ① ---- ----- ----- <u>기술지원과</u> ----- ----- ----- ----- ----- <u>기술지원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 술서기관·농업연구관 또는 농 촌지도관</u> ----- ----- -----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u>기술지원팀장</u>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u>기술지원과장</u>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7조(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 의 정원) ① ~ ③ (생 략)	제37조(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 의 정원) ① ~ ③ (현행과 같 음)
<u><신 설></u>	④ <u>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외래 병해충 예찰(豫 察)·방제 협력 업무를 담당하</u>

<u>제10장 한시정원</u> <u>제41조(한시정원) 외래 병해충 예찰(豫察)·방제 협력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1년 2월 28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농촌진흥청에 두며, 별표 11의 정원 1명(농업연구관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u>	<u>는 1명(농업연구관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u> <u><삭 제></u> <u><삭 제></u>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농촌진흥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338</u>	<u>344</u>	+6
·	·	·	
·	·	·	
일반직 계	<u>337</u>	<u>343</u>	+6
·	·	·	
·	·	·	
행정사무관 · 농업사무관 ·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u>72</u>	<u>74</u>	+2
·	·	·	
·	·	·	
행정주사 · 사서주사 · 공업주 사 · 농업주사 · 식품위생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 농업 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46		
<u>행정주사 · 농업주사 · 농업 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u>	<u><신 설></u>	<u>1</u>	+1
전산주사	<u>2</u>	<u>3</u>	+1
·	·	·	
·	·	·	
운전서기보	3		

<u>농업연구관</u>	<u><신 설></u>	<u>1</u>	+1
•	•	•	
•	•	•	
농촌지도사	<u>23</u>	<u>24</u>	+1
•	•	•	
•	•	•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농촌진흥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341</u>	<u>347</u>	+6
·	·	·	
·	·	·	
일반직 계	<u>340</u>	<u>346</u>	+6
·	·	·	
·	·	·	
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u>73</u>	<u>75</u>	+2
·	·	·	
·	·	·	
행정주사·공업주사·농업 주사·시설주사·방송통신 주사·농업연구사 또는 농촌 지도사	1		
<u>행정주사·농업주사·농업 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u>	<u><신 설></u>	<u>1</u>	+1
·	·	·	
전산주사	<u>2</u>	<u>3</u>	+1
·	·	·	
·	·	·	

운전서기보	3		
<u>농업연구관</u>	<u><신 설></u>	<u>1</u>	+1
•	•	•	
•	•	•	
농촌지도사	<u>23</u>	<u>24</u>	+1
•	•	•	
•	•	•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

국립농업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519</u>	<u>523</u>	+4
일반직 계	<u>519</u>	<u>523</u>	+4
·	·	·	
·	·	·	
서기관 · 기술서기관 · 농업 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u>1</u>	<u>2</u>	+1
·	·	·	
·	·	·	
<u>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 사무관 · 농업사무관 · 농업 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u>	<u>1</u>	<u><삭 제></u>	-1
·	·	·	
·	·	·	
공업서기	11		
<u>농업서기</u>	<u><신 설></u>	<u>1</u>	+1
·	·	·	
·	·	·	
공업서기보	2		
<u>시설서기보</u>	<u><신 설></u>	<u>1</u>	+1

·	·	·	
<u>방호서기보</u>	<u>1</u>	<u><삭 제></u>	-1
·	·	·	
농업연구관	<u>76</u>	<u>77</u>	+1
·	·	·	
·	·	·	
농업연구사	<u>247</u>	<u>249</u>	+2
·	·	·	
·	·	·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

국립농업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521</u>	<u>525</u>	+4
일반직 계	<u>521</u>	<u>525</u>	+4
·	·	·	
·	·	·	
서기관 · 기술서기관 · 농업 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u>1</u>	<u>2</u>	+1
·	·	·	
·	·	·	
<u>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 사무관 · 농업사무관 · 농업 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u>	<u>1</u>	<u><삭 제></u>	-1
·	·	·	
·	·	·	
공업서기	12		
<u>농업서기</u>	<u><신 설></u>	<u>1</u>	+1
·	·	·	
·	·	·	
공업서기보	2		
<u>시설서기보</u>	<u><신 설></u>	<u>1</u>	+1

·	·	·	
<u>방호서기보</u>	<u>1</u>	<u><삭 제></u>	-1
·	·	·	
농업연구관	<u>80</u>	<u>81</u>	+1
·	·	·	
·	·	·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 수의연구관 · 보건연구관 또 는 환경연구관	<u>29</u>	<u>27</u>	-2
·	·	·	
·	·	·	
농업연구사	<u>242</u>	<u>246</u>	+4
·	·	·	
·	·	·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

국립식량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농업연구관	.		.		.	-1	
	.		.		.		
			<u>76</u>		<u>75</u>		
농업연구사	.		.		.	+1	
	.		.		.		
			<u>159</u>		<u>160</u>		
	.		.		.		
	.		.		.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4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330</u>	<u>335</u>	+5
일반직 계	<u>330</u>	<u>335</u>	+5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326</u>	<u>331</u>	+5
·	·	·	